

“그린·라운드” 法理의 展開

金元主*

目次

- I. “녹색세계”를 향한 도전
- II. “녹색세계”의 구현을 가로막는 환경의 오염·파괴
- III. “녹색세계” 구현을 위한 세계적 노력
- IV. “녹색세계”와 세계교역
- V. “그린·라운드” 법리의 전개 -결어-

I. “녹색세계”를 향한 도전

우리나라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찬양하고 있다. 이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할 의무를 당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環境政策基本法 第2條(基本理念)는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72년 6월 Stockholm의 유엔人間環境會議에서 채택된 “人間環境宣言”은 환경권을 기본적 인권으로서 인정할 것과 입법화를 요구하였다. OECD는 1974년 11월 14일 제372차 이사회에서 공공 및 사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원칙으로서 환경의 오염·파괴의 사전방지를 권고하였다.¹⁾

* 慶北大 法大 教授/法學博士

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74) 216.

1990년 6월 13일에 체결된 조약인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第12條(健康의 權利등) 2항 (b)는 “環境 및 産業衛生의 모든 部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2년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리우회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많은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필요성, 선진국이 주장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역할분담론의 논리적 한계의 입증, 환경자원의 희귀성 증대에 따른 국가간, 지역간의 분쟁증가의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등이다.²⁾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것, 즉 “녹색세계”의 구현은 쉬운 일이 아니다. 私的 事業의 經營者에게 있어서는 환경보전과 지구보호는 경영의 악화와 직결되는 것이었다.³⁾

그러나 최근에 환경과 경제적 문제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통적 지혜가 제시되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환경과 경영이 함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녹색세계”의 구현은 私的 事業에 있어서 경비의 증가가 아니라 발전의 촉매이며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고 富의 창출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환경관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익이 사적 사업의 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새로운 “녹색의 세계”에서는 사적사업의 경영자는 새로운 상품의 생산을 기획·실천할 것이고 그것은 또한 보다 적은 환경의 오염·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직접적 생산원가의 절감을 가지고 올 것이다.⁴⁾ 이러한 양상은 우리 나라

2) 정진승,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본 방향(법과 환경정책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1994년 11월 22일), p. 7.

3) Richard A. Clarke, “The Challenge of Going Green”,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94, p.37.

4) Philip L. Comella, “Understanding A Sham : When is Recycling, Treatment?”, Boston College Environmental Affairs Law Review, Vol.20, No.3, 1993, p.415 ff.

에 있어서 低有害비닐주머니의 개발이나 廢紙의 再活用을 통한 종이의 생산에서 볼 수 있다.

강력한 세계적 경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면에서의 건전성에 의해서만 실현·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타협과 조정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의 오염·파괴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집약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적 이윤추구에 전념하는 자에게 있어서 환경문제의 극복이나, 환경보전이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환경보전의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관한 법, 혹은 다른 법도 눈에 보이는 재정적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환경규제제도의 비효율성이나 불필요성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여기에 환경규제의 완화가 아닌 환경규제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그러한 개혁의 중점은 통제와 명령의 환경규제를 줄이는 대신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초를 둔 유연한 수단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人間의 共同善이 더욱 강조될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녹색세계”의 구현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을 위한 법체계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의 해답은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의 오염, 파괴현상의 검토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녹색세계”의 구현을 가로막는 환경의 오염, 파괴

1. 오존층의 파괴

成層圈에 있는 오존(ozone)은 地表로부터 10km 내지 50km 위에

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ultraviolet-B ; UV-B) 방사능의 유해성에 대하여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한다. 1973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chlorofluorocarbons(CFCs)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오존층의 파괴는 紫外線放射能의 증가를 가져오며, 그것은 또한 피부암 등을 가져와서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 입증되기에 이르렀다.

몇 개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압축분무통(예, 살충제) 등에 있어서의 CFCs의 사용제한을 하였으나 1980년대까지는 어떠한 국제적 통제수단도 강구되지 아니하였다. 1986년에 인공위성에 의한 오존층의 분석 결과 지구상의 오존층 4%가 손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986년과 1987년에 걸쳐 미국의 우주항공국(NASA)은 Ozone Trends Panel(OTP)을 세계 여러나라의 과학자로 구성, 연구케 한 결과 CFC 이론을 확인하게 되었다.

1977년 3월에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아래 워싱턴에서 유럽공동체(EC)를 포함하여 33개국이 참석하여 오존층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세계계획이 작성되었다. 이 계획은 UNEP와 더불어 각국의 정부, 유엔기구, 국제적 그리고 비정부적인 기구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완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Coordinating Committee on the Ozone Layer(CCOL)이 창설되고 활동계획도 채택되었다.

1987년 9월의 Montreal회의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생산품의 수입금지가 논의되었다. 이 때 일부 대표는 그러한 조치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였으나, GATT관리는 그러한 금수조치가 명백히 환경보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⁵⁾

5) Edward A. Parson, “Protecting the Ozone Layer”, Institutions for the Earth(MIT Press, 1993), p. 45.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소비의 삭감을 위해 채택된 1987년의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우리 나라는 1992년 2월에 가입하였고, 동 의정서의 제1차 개정의정서에도 같은 해 12월에 가입함으로써 1993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그 사용을 75% 감축해야하게 되었다.

2. 대기의 오염과 지구온난화

세계에서 가장 강한 死神중의 하나가 대기의 오염이다. 그러한 사실은 회랍의 도시 아테네에 있어서 사망자의 수가 대기가 많이 오염된 날에 6배 더 높았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헝가리에서는 17명의 사망자중 한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인도의 봄베이에서는 대기가 오염되어 그곳에서 숨든다는 것은 하루에 담배 10개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고통이 보편화되어 “베이징 기침”(Beijing Cough)로 불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오염은 세계적 공중보건상 긴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유엔의 공식통계는 인류의 5분의 1이 숨쉬기에 적합하지 않는 대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⁶⁾ 이러한 대기오염은 국경을 쉽게 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1억 5천만 명이 건전하지 못한 대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환경청(EPA)이 밝히고 있으며, 미국결핵협회는 이러한 현상이 해마다 12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보고 있다.

1세기 전에는 대기오염이 산업혁명 이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보다 더 복잡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되었다. 東歐와 中國에서는 아직 석탄연료가 주된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자동차와

6) Hilary F. French, “You Are What You Breathe”, The World. Watch Reader on Global Environmental Issues(W.W.Norton & Co., 1991), p.97.

공장시설들이 주된 대기오염원으로 근래에 등장하고 있다.⁷⁾

한편 지구온난화현상은 대단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대기오염문제가 이제 지나간 어제의 문제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원이나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가져오는 온실효과발생원의 가스는 다같이 화석연료를 공장, 교통기구 등에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문제는 다함께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도 정책입안자들은 별개의 문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1988년 6월 23일 미국 상원청문회에서 우주항공국(NASA)의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책임자인 James Hansen 박사는 지구의 온난화는 시작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한 위협은 정책수립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⁸⁾

미국 환경청(EPA)은 2100년경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 해수면이 평균 약 1미터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체결된 기후변화대체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가스 농도의 저하·안정화를 위한 규제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선진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천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바,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인도양에 있는 작고 낮은 지역에 위치한 나라인 Maldives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7) Joseph M. Feller, "Non-Threshold Pollutants and Air Quality Standards", Environmental Law Vol.24, No.3, 1994(U.S. Periodicals, Northwestern School of Law, p.821 ff.

8) Christopher Havin, "The Heat is On", The World. Watch Reader on Global Environmental Issues(W.W.Norton & Co., 1991), p. 75.

3. 산성비

유럽에 있어서 대기오염의 절반은 국경을 넘는다. 그것은 또한 물고기와 나무를 죽이고 건물이나 유적을 부식시킨다. 각국의 정부, 구주 공동체(EC) 그리고 the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LRTAP) 등이 이에 대하여 필사적인 대책을 세웠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LRTAP에 참가하였고 공동연구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창시 초에는 30가맹국 중 2개국만이 산성비가 중대한 환경상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뿐이었다. 모든 가맹국이 산성비가 가져오는 환경보존상의 유해성을 재인식하게 됨에 따라 그 활동은 산성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의 설정이라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LRTAP의 정책은 과학적 연구계획의 조정, 연구와 국가정책의 검토를 위한 정기적 회의, 산성비 발생원 감소를 위한 전략의 수립, 그리고 감소 목표량 및 그 시기의 설정 등으로 구성되었었다. 규제 대상은 sulfur dioxide(SO₂), nitrogen oxides(NO_x), volatile organic compounds(VOGs) 등이었다.⁹⁾

SO₂와 NO_x의 배출은 대기중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산성비를 발생케 하며, 그것은 삼림, 농작물, 호수 및 지하수 등의 水資源, 건축물, 기계 등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산성비는 오염가스가 국경을 넘어 이동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도 해를 미치므로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 유럽환경위원회(The European Environment Council)는 SO₂의 배출량을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1983년에는 20%, 1988년에는 40%, 2003년에는 60% 감축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NO_x는 1993년까지는 15%, 1988년까지는 30% 감축키로 하였다. NO_x의 주요발생원인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하여,

9) Marc A. Levy, "European Acid Rain : The Power of Tote-Board Diplomacy", Institutions for the Earth(MIT Press, 1993), p.75 ff.

1993년부터 모든 차량에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를 장치하도록 하였다.¹⁰⁾

4. 삼림의 황폐화

삼림은 동·식물, 토양, 암석 등과 더불어 상호의존의 작용으로써 水分, 기후 등과 함께 인류생존을 조건지운다. 따라서 삼림의 황폐화는 이러한 상호의존의 균형상태를 위협하며 그것은 인류의 생존문제에 직결된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노력은 쉽게 자금화가 가능한 열대림의 남벌,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등의 증산을 위한 농경지·방목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火田방식의 도입에 따른 열대림의 소각 등이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다.¹¹⁾

지구상의 육지면적은 약 130억 ha이다. 8,000년전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61억 ha의 삼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약 28억 ha의 삼림과 약 12억 ha의 疏林만이 남아있다. 1960년 전후에는 삼림면적이 육지의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5분의 1로 되었다.

UNEP와 FAO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130만 ha, 아세아에서는 180만 ha, 중남미에서는 420만 ha의 삼림이 해마다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20세기 말에는 삼림면적은 육지의 6분의 1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²⁾

열대림은 지구상의 온도를 보존·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상록수인 열대림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열대림이 지구상의 7%를 덮고 있으나 그 생태학적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다.

10) 정진승,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본 방향(법과 환경정책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발표요지, 1994. 11. 22), p. 6.

11) 全昌祚, 地球環境의 危機(世宗出版社, 1992), p. 444.

12) 全昌祚, 上揭書, pp. 450-451.

즉, 습도를 일년 내내 비슷하게 유지하고, 생물의 탄생·육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열대림은 해마다 인간이 배출하는 carbon dioxide의 7% 내지 31%를 흡수한다.

미국의 Smithsonian Tropical Research Institute의 식물학자는 Malaysia에 있어서 125acre 범위내의 나무에서 835종류의 種(species)을 발견하였다. 지구상의 모든 種의 半 이상의 서식처가 열대림이다. 하바드 대학의 Edward Wilson 교수에 의하면 1년에 1만개의 種이 사라지고 있다.¹³⁾

이러한 種의 滅失은 생태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의 멸실을 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열대림 속의 種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의약품의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1,400여 개의 열대성 식물은 암에 대하여 특효약으로서의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개별 국가와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정책은 이 삼림에서 그 자원을 뽑아내고 낭비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5. 바다의 오염

바다는 인류에게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과 영양소, 그리고 기름·광물 등의 자원을 제공해 주는 보고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그러한 바다를 무한정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여기고, 이용하여 왔다. 바다의 自淨能力을 믿었기 때문이다.¹⁴⁾

선진공업국의 산업화가 발전이라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진된 환경의 보전·향상을 도외시한 공업화경쟁은 바다를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다.

13) Alan Durning, "Cradles of Life", The World. Watch Reader on Global Environmental Issues(W.W.Norton & Co., 1991) p.170.

14) Klaus Fiedler, "Naturwissenschaftliche Grundlagen natürlicher Selbstreinigungsprozesse in Wasserressourcen", Zeitschrift für Umweltpolitik & Umweltrecht(Deutscher Fachverlag GmbH, September 1994) S.323 ff.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는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바다의 오염은 전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특정한 海域과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한 예의 하나가 발틱과 북해(the Baltic and North Seas)의 연안국가가 1970년대부터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13개국 정부는 1972년에 선박과 비행기로부터의 投棄에 의한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즉, Oslo Convention을 체결하였다. 1974년에 북동쪽 대서양 연안의 12개국의 정부는 연안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즉 Paris Convention을 체결하였다. 1974년에 Oslo Convention은 Oslo Commission을, 그리고 1978년에 Paris Convention은 Paris Commission을 설립하였다. 발틱 연안의 7개국 정부는 발틱해의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1974년 Helsinki Convention을 체결하였고 또한 1980년에는 Helsinki Commission을 설립하여 발틱해 오염원을 규제하였다.

또한 1972년의 人間環境宣言, 1982년의 U.N.Convention on the Law of Sea 등도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로 등장·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법적 장치의 발전모델은 “그린·라운드”(Green Round)법리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 크다.

6. 수자원의 고갈

이집트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Boutros Ghali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다음 전쟁은 정치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일江의 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회답을 하듯 이스라엘의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Meir Ben-Meir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수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¹⁵⁾

15) Sandra Postel. “Emerging Water Scarcities”, The World.Watch Reader on Global Environmental Issues(W.W.Norton & Co., 1991) p.128 ff.

요단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나일강 등 3대강으로부터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의 공급은 3분의 2선으로 제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물의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절충은 계속되고 있다. 12세기에 스리랑카의 Parakrama Bahu 대왕은 수자원 담당관들에게 물에 관한 궁극적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그것은 “아무리 적은 양의 물이라도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빗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8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각국은 많은 댐, 저수지, 운하를 건설하였고 그곳에 저장된 물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보낼 수 있는 경쟁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집트의 에스완, 미국의 캘리포니아水道橋 등 현대과학의 작품은 문자 그대로 사막에 꽃을 피운 것이다. 식량생산, 산업발전 그리고 도시개발의 중심적 요소로서 수자원의 개발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곧 Parakrama Bahu 大왕의 “명령”을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水量이 줄어드는 강들, 降雨量의 減少, 좁아지고 바닥이 높아지는 호수들 등은 인류의 水資源의 濫費와 더불어 水資源枯渴問題의 심각성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훼손과 새로운 수자원개발비용의 상승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자원고갈의 문제가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적 문제에 그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는 전세계적인 것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Erie湖와 같이 수자원의 이용과 맑은 물의 보존의 문제, 上流工業國에서 放流시킨 화학물질성분의 폐수를 둘러싼 라인강 유역 나라들 간의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갈등발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 이후에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천지의 수자원 관리를 둘러싸고 중국과 이해관계가 대립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여 준다.

Ⅲ. “녹색세계”구현을 위한 세계적 노력

1992년 6월 3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U.N.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는 리로宣言과 議題21(Agenda21)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도 生物多樣性 保全條約과 氣候變化條約에 서명하였다.

1972년의 Stockholm 人間環境會議 이후 20년만에 개최된 리우회의는 건전한 환경과 지속이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내걸은 것으로서 의제21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⁶⁾

지구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고 인류에게 건전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유엔체제의 내외에서, 지역단위로, 혹은 政府間機構나 非政府間機構에 의해 행하여져 왔다.

1968년 유엔총회는 1972년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Stockholm회의의 권고에 따라 1972년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의 설립도 결의하였다. UNEP는 관련 유엔기관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조정하고, 각국 정부, 과학 및 경제단체, 비정부간기구 등과 환경문제를 협의·협력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UNEP는 해마다 “환경상태”(State of the Environment)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UNEP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환경평가, 환경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이다. 그 하나가 “지구감시”(Earthwatch)이다. 지구감시체제의 3개 요소는 ① 지구환경감시체계(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 GEMS) ② 국제자문기구(International Referral Service ; IRS) ③ 국제유독화학물질등록(International Register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s ; IRPTC)이다.

1947년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16) 盧明濬, “環境保全을 위한 國際機構”, 環境法研究 第14卷(韓國環境法學會, 1992), p.165 ff.

Commission ;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법전화를 그 활동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법과 관련이 있는 “국가책임”과 “평화와 인류의 안전에 대한 죄”에 관한 법전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957년에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 IAEA)는 핵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방사선물질의 안전한 수송, 핵사고의 경우 가맹국에 대하여 긴급원조를 제공한다.

유엔헌장에 의해 설립된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FAO)는 1977년 UNEP와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환경보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1년 10월 세계토양헌장(World Soil Charter)을 선포하였다. FAO는 환경보전, 자연자원보전, 수질오염규제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국내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AO는 농약규제를 위한 모범법안을 제정하고 농약의 부작용에도 대처하고 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는 1970년 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Biosphere Program ; MAB)을 추진하여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연계의 보존, 자연계의 유전자원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또한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1989년 12월의 지역보건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과 보건에 관한 유럽헌장(European Charter on the Environment and Health)을 채택하였다. 이 헌장은, 모든 사람은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그것을 실현·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오염자비용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도 채택하였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유권적 지식을 제공하는 유엔의 기관이다. WMO는 1989년에 세계대기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지구에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가스의 농도변화, 오존층의 변화, 산성비 등을 탐지할 조기경보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은 1988년에 세계보존연맹(World Conservation Union)으로 개칭하고, 개발정책이 생물자원의 보존, 지구생태계의 보존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환경에 유해한 자료집(Red Data Books)을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961년에 발족한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 WWF)은 야생 동·식물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기금의 모금·관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Greenpeace, 여성환경개발기구(WED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공동체(EC), 남태평양위원회 등 비정부간국제기구나 지역적국제기구 등이 환경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세계”구현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생태계와 환경보전이 위협에 처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그것은 종래의 형태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쳐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UNCED가 지구헌장 즉, Agenda 21을 구현하기 위해 취한 국가의 협조를 전제로 한 방법은 국가가 그들의 국경적 주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면 결코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장벽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보전제도는 국경에 그 절대적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¹⁷⁾

17) Jessica Tuchman Mathews, “Redefining Security”, Foreign Affairs 68, 2(Spring 1989), p.174.

따라서 편견에 빠지지 않은 지구의 보존, 생태계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지구의 보호는 국가주권의 절대성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의 전환 내지 조정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¹⁸⁾

IV. “녹색세계”와 세계교역

상품의 국제교역은 1950년 이래 해마다 5.4%씩 증가하여 왔고 1990년에는 그 총액이 3조 5천억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는 加工된 상품은 물론이고 식량과 같은 일차상품, 원자재, 광물, 에너지 등도 포함된다. 用役의 교역도 8천 1백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것은 그것이 좋은 나쁜든 여러가지 형태로 세계적인 환경양상이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값이 싼 말레이시아 열대림의 나무들이 일본으로 수출되면, 일본은 이를 합판으로 가공하여 건축자재로 수출한다. 이튿날 자동차의 바테리가 미국으로부터 브라질의 쌍파울로市 교외에 있는 폐기물재생공장으로 수출된다. 그 재생공장의 종업원은 환경규제가 대단히 열악한 관제로 해서 29명 중 25명이 혈중 납성분이 미국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북·캐백에 있는 라·그란드강의 발전시설은 뉴·잉글랜드로 전기를 수출하나, 때로는 벨지움 전국토의 절반쯤이나 되는 지역을 홍수로 잠기게 한다. 지상의 낙원으로 알려지고 있던 크리섬은 자연발생의 수온으로 인하여 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세계교역으로 하여금 환경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것은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제교역은 상품시장을 국외로 확대함으로써 생산에 수반되는 환경적 결과를 확대시킨다. 둘째, 국제교역

18) Robert O. Keohan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Institutions for the Earth(MIT Press, 1993), p.3 ff.

은 국가로 하여금 그들이 다 써버린, 그러면서도 필요로 하는 상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환경상 유해한 것도 함께 들어오게 한다. 셋째, 국가의 환경보전관계법을 또는 몇몇 국제적 환경보전관계의 조약들은 국제교역에서의 관세장벽폐지에 대한 장해요소로 공격을 받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국내에 있어서의 환경질의 향상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보전이라는 세계적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오염·파괴에 대처하는 데에는 국가 단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세계적 협동이 필수불가결의 것이 되었다.¹⁹⁾

국제적 교역과 환경보전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견해는 양자가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1948년에 설립된 GATT는 1930년대에 있어서 세계적 불경기의 원인으로 비난받았던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 당시 환경문제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문제는 국제교역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날마다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²⁰⁾

그것은 GATT로 하여금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를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로 1995년 1월부터 간판을 바꾸게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북미자유교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에서 각국 정부는 남아버린 세계교역의 법적 장치들, 오늘날의 세계환경문제와 병존·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창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그린·라운드”(Green Round) 法理의 전개 가능성과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국제교역이 지구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인류에게 정의의 약속하고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이제 모든 정책수립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해

19) Charles S. Pearson and Robert Repetto, “Reconciling Trade and Environment : The Next Steps”, The Greening of World Trade(A Report to EPA, Feb.1993), p.83 ff.

20) 李相敦, “環境保護와 貿易規制”, 環境法研究 第15卷(韓國環境法學會, 1993), p.9 ff.

공헌할 수 있는나고 하는 신념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²¹⁾

환경보호론자들은 자유교역이 자연자원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반면에 자유무역론자들은 엄격한 환경규제가 세계교역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유무역과 환경보존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短期間內라는 조건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환경문제가 일반적인 국제무역의 법적 장치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배제할 수 있는나 하는 점이다. 동시에 자유무역론이 어떠한 환경상의 장애를 뛰어 넘을 수 있는나 하는 것이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국내의 환경·보건·안전을 저해하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금한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국은 즉시 자기들의 수출품이 수출대상국의 환경기준치에 맞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생산자들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치를 미국 기준치에 맞도록 생산한 점에서도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진실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인지 혹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위장된 규제인지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NAFTA와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는 관련법률의 과학적 검증을 할 것이다. 즉, 과학적 원칙에 입각한 인간, 식물, 동물의 건강한 생존 및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그 기준 및 내용이 될 것이다.²²⁾

21) Katharina Kummer, “Providing Incentives to Comply with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An Alternative to Sanctions”, *European Environmental Law Review*(Graham & Trotman, Oct. 1994), p.256 ff.

22) Hilary F.French, “Reconciling Trade and the Environment”, *State of the World 1993*(W.W.Norton & Co., 1993), p.158 ff.

V. “그린·라운드”법리의 전개 -결어-

구약성서는 인간의 낙원이 에덴동산이었으며, 푸르고 풍요로운 낙원에서 인간이 추방된 것은 신의 계율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서 먹은 것, 즉,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서는 노아의 方舟로써 필요로 하는 인간과 동물을 구하고 나서, 홍수로써 더럽혀진 자연 등을 “청소”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佛家에서는 輪廻思想으로써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는 因果의 가르침으로, 森羅萬象이 본래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攝理를 깨쳐주고 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의 존재가치를 있게 한 것을 잊고,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환경오염, 파괴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環境法의 根本規範일 것이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孔子님의 “克己復禮”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세계의 인류는 푸른 “녹색세계”에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생태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은 아황산가스를 마구 내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운동부족이라는 생명에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조깅”이라는 이름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사고와 행동은 본 논문의 제2장에서 지적한 오존층의 파괴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현상은 세계적인 것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개인, 개인적 집단, 지역적 집단,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행하여져 왔고 또한 행하여지고 있음을 본 논문 제3장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인 상품의 생산과 그 국제적 교역을 연계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주장되는 “그린 라운드”의 법리이다.

자동차의 매연을 엄격히 규제하는 기준치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한 것을 보면, 화장지는 廢紙로 再生한 것에 한한다고 규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것은 많은 삼림을 살려놓은 결과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제시되는 문제점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인 국제적 南·北問題이다. 소비에트聯邦의 붕괴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경제적인 선·후진국의 문제, 즉, 국제적 남·북문제의 대두로 인해, 선진국이 제시·설정한 환경기준을, 후진국은 또 다른 세계무역의 장벽으로 간주·주장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세계화적 사고의 필요성이 등장한다.²³⁾ 세계화의 근본이념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합리적 사고로 생각된다. 따라서 또 다른 무역전쟁의 원인이 될 법적 장치가 아니라, 인류에게 지속이 가능한 성장과 “녹색의 세계”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그린·라운드”法理의 기본골격이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하는 개인·단체·국가의 협조와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지방자치단체·국가 그리고 국제연합을 주축으로 해서, 유엔아래 범인류적 환경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그러한 작업을 중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에 smog 현상에 가려진 태양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햇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技術法으로서의 環境法을 世界法으로 向上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3) Graciela Chichilnisky, “North-South Trade and the Global Environ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 No.4, September 1994, p.851 ff.